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공지능의 활용 확대, 자동적 처분의 도입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특별성과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소속 직원 및 해당 기관에 파견온 직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혁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서처리 기본원칙 및 문서의 성립에 관한 사항 개선·보완(안 제3조, 안 제5조 및 안 제6조)

- 1)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 제고, 체계적인 전자문서 관리와 더불어 인공지능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를 처리하여야 함을 기본 원칙으로 정함
- 2)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적 처분”의 정의를 규정하고,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으로 생성되는 문서는 그 자동적 처분을 규정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됨으로써 문서가 성립함을 규정함

나. 관인 관리에 관한 규정 개선(안 제37조, 안 별표)

1) 폐기된 관인의 이관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인 공공기록물법령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폐기된 관인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던 것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함

2) 관인의 규격(별표)의 국무회의 청인에 관한 규정은 사문화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함

다.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식의 외국어 번역·제공 노력 신설(안 제32조)

외국인 민원인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서식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 혁신 성과 평가 근거 마련(안 제44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혁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혁신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마.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개선(안 제46조의9)

1) 특별성과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직원(해당 기관에 파견온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확대함

2) 특별성과 포상금을 인사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와 병행하여 부여할 수 있음을 명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4. 10. ~ 2026. 4.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자동적 처분”이란 「행정기본법」 제20조의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하는 처분을 말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활용하기”를 “관리하며 인공지능 등에 활용하기”로, “처리하도록 노력해야”를 “처리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자동적 처분으로 생성되는 문서는 그 자동적 처분을 규정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가 처리됨으로써 성립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따라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해당 기

록물관리기관”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혁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혁신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6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직원(해당 행정기관에 파견된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특별성과 포상금은 인사 관계법령 등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와 병행하여 부여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별표]

관인의 규격(제35조 관련)

(단위: cm)

구분		길이
청인	합의제기관	3.6
직인	대통령	4.5
	국무총리	3.6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	3

비고: 위 길이는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변의 최대 길이, 원 또는 다각형인 경우에는 최대 지름 또는 대각선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략) <u><신설></u>	제3조(정의) ----- -----. 1. ~ 14. (현행과 같음) 15. “자동적 처분”이란 「행정기본법」 제20조의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하는 처분을 말한다.
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자문서를 체계적으로 <u>관리·활용하기</u>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를 <u>처리하도록 노력해야</u> 한다. 1. ~ 3. (생략)	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관리하며 인공지능 등에 활용하기</u> ----- ----- <u>처리하여야</u> ----- --.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 ----- ----- -----

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단서 신설>

②·③ (생략)

제32조(서식에 해당 국가 언어의 병기 등) (생략)

<신설>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이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39조에 따른 관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

----- . 다만, 행정기관의 자동적 처분으로 생성되는 문서는 그 자동적 처분을 규정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가 처리됨으로써 성립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서식에 해당 국가 언어의 병기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따라
관할 기록물관리기관-----
----- . ----- 해당 기록물

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
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①·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회 등 연구단
체, 전문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
는 일부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44조(행정업무 혁신의 점검·관
리 및 지원) ① ~ ④ (생략)

<신설>

제46조의9(행정업무 특별성과 포
상금)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

관리기관-----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행정업무 혁신의 점검·관
리 및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업무 혁신을 장려하
기 위하여 행정업무 혁신 성과
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6조의9(행정업무 특별성과 포
상금) ① -----
직원(해당 행정기관에 파견온

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포상금(이하 “특별성과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특별성과 포상금은 <u>공무원</u>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u><신설></u> <u>③</u> · <u>④</u> (생략)	<u>직원을 포함한다</u>)-----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u>직원</u> ----- ----- -----. ③ <u>특별성과 포상금은 인사 관계법령 등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와 병행하여 부여할 수 있다.</u>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2404